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자율방제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교육·훈련,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운영 및 임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장의 방제조치 명령서의 양식을 법제화하여 방제조치 명령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해양환경측정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안 제5조)

기존 해양환경공단에서 수행하던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운영 및 그 운영결과의 평가 사무를 보다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진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도록 함

나. 방제조치 명령 방식 등 법제화(안 제30조의2, 별지 제19호)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조치 명령을 별지 19호와 같은 방제조치 명령서에 따라 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 구두·전화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운영, 임무 등

(안 제35조의2, 별표13의2, 별표13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별표 13의2에 따른 방제자재 등을 갖추도록 하고, 그 임무를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건의 등으로 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유해액체물질”을 “유해액체물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해액체물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해액체물질”로 한다.

제20조의3(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서
2.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자격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0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방제조치 명령)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한 방제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9호와 같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전화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방제조치 명령을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의2(해양자율방제대)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별표 13의2에 따른 방제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자율방제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어촌계에서 안정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에 필요한 선박 또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③ 법 제68조의2제5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 시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
2.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참여
3.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건의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 교육은 해양경

찰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자율방제대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출동경비

2. 교육·훈련경비

⑥ 법 제68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체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라 폐기물 위탁자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증명서

2.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2조제1항”을 “영 제9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후 최초”를 “최초”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교육·훈련과정: 2일 이내

제8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훈련대상자를 고용한 자”를 “교육·훈련대상자”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비치량란 중 “10만kl미만”을 “1만kl미만”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비치량란 중 “ $20X+50Y+15Z=U$ ”를 “ $20X+50Y+15Z=W$ ”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비치량란 중 “ $20X+50Y+15Z=U$ ”를 “ $20X+50Y+15Z=W$ ”로 한다.

별표 13의2, 별표 1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호(Registration No.)

유창청소업 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Oil Hold Cleaning Business

1. 성명(대표자):

Owner:

2. 생년월일:

Date of Birth:

3. 상호:

Name of Company :

4. 사업의 종류:

Kind of Business :

5. 사업소의 소재지:

Address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erified the registration as above according to the Article 70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he Article 55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Article 36(5)(3)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인

Commander of the Korea Coast Guard (stam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해양자율방제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35조의2 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방제자재를 보관·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방제자재기준

구 분	종 류	보유기준
방제자재	오일펜스 유흡착재	40m 이상 30kg 이상
개인보호장구	보호장구세트 일회용작업복, 장갑 등	10 set 이상 20착 이상

※ 비고

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과 방제자재 외의 방제장비 및 자재를 증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나. 어촌계 지역 내에 동원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유의 방제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해양자율방제대 재해보상의 종류 및 지급기준(제35조의2 제4항 관련)

1. 재해보상의 종류

- 가. 요양보상: 구성원이 방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 나. 장애보상: 구성원이 방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 다. 장제보상: 구성원이 방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라. 유족보상: 구성원이 방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비고 : 제다호 및 제라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대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재해보상의 지급 기준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순경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순경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순경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애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해 양 오 염 방 제 조 치 명 령 서

방 제 의 무 자	①선명(선박번호, 톤수) 또는 법인명	②연락처(전화) (팩스)
	③성명(직책)	④연락처(전화) (팩스)
참 고 인	⑤성명(법인명)	⑥연락처(전화) (팩스)
	⑦방제의무자와 관계	
⑧사고 개요		
⑨명령 사항		⑩조치 시한
⑪ 조치 해역		
⑫ 담당자	(1) 소속 (2) 성명 (3) 전화 (4) FAX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동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명합니다. 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동법 제1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법 제64조제4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210mm×297mm(백상지 80g/㎡)

폐기물위탁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양도인, 피상속인, 합병 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권리·의무 승계일			
권리·의무 승계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7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1부. 3.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 1부(폐기물해양배출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① <u>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u>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① <u>국립수산물과학원장</u>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u>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u>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의 구성·운영계획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u>국립수산물과학원장</u>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해양수산부장관은</u> 매년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u>국립수산물과학원장</u> ----- -----.
제11조(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①·② (생략)	제11조(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u>유해액체물질</u> 을 처리하는 기	③ ----- <u>유해액체물질</u> ----- <u>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u>

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서는 오염사고에 대처할 목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①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처리하게 하여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유해액체물질(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

칙」 제3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 -----

유해액체물질 -----

-----.

제20조의3(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서
2.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자격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를 이용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2)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유해물질 잔류물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방제조치 명령)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한 방제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2와 같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전화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방제조치 명령을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의2(해양자율방제대)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별표 13의2에 따른 방제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자율방제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어촌계에서 안정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에 필요한 선박 또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③ 법 제68조의2제5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 시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

2.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참여

3.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건의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 교육은 해양경찰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자율방제대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출동경비

2. 교육·훈련경비

⑥ 법 제68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체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73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리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4. (생략)

제45조(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등)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려는 자는 법 제7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사본(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

-----.

1. 2. (현행과 같음)
3. 「물환경보전법」 -----

4. (현행과 같음)

제45조(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등) ① ---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제78조(교육·훈련 대상자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후 최초로 받는 교육·훈련과정: 3일 이내

2. 제1호 외의 교육·훈련과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교육·훈련을 받은 후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체에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 폐기물 위탁자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증명서

2.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제78조(교육·훈련 대상자 등) ① 영 제92조제2항-----
-----.

1. 최초-----

2. 제1호 외의 교육·훈련과정: 2일 이내

기술요원으로 채용되어 교육·훈련을 받은 후 다른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2일 이내

②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의 승선(乘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0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알려야 한다.

1. (생략)

2.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지방해양수산청장

3. (생략)

②·③ (생략)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0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교육 · 훈련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교육 · 훈련을 실시하는데 드는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④ ----- 교육 · 훈련대
상자-----

-----.